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60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293,980원, 가산세 13,349,370원, 농어촌특별세 3,364,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가산세 13,349,31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가. 원고는 로봇 무인방제기 제조 및 수리, 용역업,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공급업,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공급업, LED 제조판매업, 농업용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 8. 28. 설립된 법인이고, 본점소재지는 순천시 B이다.

나. 원고는 2010. 3. 17. [redacted]구 C 대 457.2㎡ 및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하여 2010. 4.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취득세 58,349,040원, 농어촌특별세 5,834,900원, 등록세 58,349,040원, 지방교육세 11,669,8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6. 위 건물 3층 199.92㎡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고, 2010. 11. 5. 증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취득세 2,044,790원, 농어촌특별세 204,470원, 등록세 817,910원, 지방교육세 163,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0.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5,360,210원, 농어촌특별세 536,01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293,980원, 가산세 13,349,370원, 농어촌특별세 3,364,3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수도권영업 및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 서울지점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대표이사실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서울지점에 방문하는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에 불과하고, 부회장실은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영업을 담당한 명목상 부회장 D이 사용한 공간이며, 임원실은 서울지점에서 고객 접객용으로 사용한 공간으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본점의 사무소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을 제3호증(현장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표이사실, 부회장실, 임원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스스로 현장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 등이 실제 집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본점에서 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있는 위 방실들이 실제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집무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본점의 사무소나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순순히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그 액수가 많지 않고 과세당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오히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원고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순천시 B에 위치한 본점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점은 수도권영업 등의 업무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본점과는 그 구조 및 기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서울지점의 부속시설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